

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정 2005. 6. 4 조례 제1388호
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11. 4. 15 조례 제1767호(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2. 8. 8 조례 제1868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6. 11. 18 조례 제2211호(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따라 광명문화원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8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문화원사”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한 건축물
2. “광명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광명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8]

제3조(시설 운영)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, 강좌실,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8]

제4조(사업)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2. 8. 8>
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료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·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삭제 <2016. 11. 18>
9.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.
10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
11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5조(시설의 개방)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8. 8>

제6조(위탁관리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에 관리·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2. 8. 8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8. 8>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계획서 제출)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,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7호,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8. 8 조례 제186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1. 18 조례 제2211호,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.